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('21.3.9.) 및 행정안전부 정원감사('24.6.24.~28.) 결과를 반영하여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·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,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가중·감경 사유 구체화

고의·중과실 등 과태료 가중 사유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사소한 부주의나 경과실,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한 경우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화함

나.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근거 마련

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탁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재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재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
제36조제2항 전단 중 “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”로, “가중 또는 감경”을 “감경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6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3.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5.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, 결과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
2.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 등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.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4.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, 결과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법 제 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5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업 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재위 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재위 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제3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(생략)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 의 동기·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 다.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 태료의 총액은 법 제6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 <u><신설></u>	제3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별표 2----- ----- ---- 감경----- --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 1.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3.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
5.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, 결과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

2.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 등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4.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, 결과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316